

타임사 대 화이어스톤 사건

Time, Inc. v. Firestone
424 U.S. 448 (1976)

플로리다주 「팜비치 4001의 저명인사인 메리 앨리스 화이어스톤(Marry Alice Firestone)은 그녀의 남편인 러셀 화이어스톤(Russell Firestone)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중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이혼사유로 제기한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그녀의 행위가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사에는 그녀의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메리 앨리스 화이어스톤의 사진과 이들의 이혼소송과 관계가 있는 잭 하우드(Jack Harwood)의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2단계 도청」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플로리다에서는 전자도청장치가 빈번히 이혼소송에 사용되며 팜 비치의 잭 하우드 같은 인물은 번창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러한 장치를 활용한다.

"나는 대단한 전파인간"이라고 자부하는 하우드는 사업에 지친 러셀 화이어스톤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업을 위해 거꾸로 하우드의 도움을 얻고 있었다…… 화이어스톤 부인은 대단히 잔인하게 간통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라이프 지의 보도에 대해 화이어스톤 부인은 그 기사가 이혼소송중에 처한 자신의 명예를 손상함으로써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연적 명예훼손(libel per quod)을 사유로 고소를 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다룬 1심에서는 그녀의 제소를 각하했으나 연방항소심은 그녀의 공소사유가 다음과 같이 이유있다고 보고 일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녀의 지연되곤 있는 이혼소송에 해를 끼쳤다는 항소심의 주장은 외연적 명예훼손에 대해 「특별한 피해」의 주장을 성립케 한다고 보며, 이러한 주장은 각하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이 성립되므로…… 화이어스톤 부인이 그러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송한 항소심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플로리다 법정은,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속에서 받고 있는 기대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는 근본적으로 미움을 받지는 않으나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여성이 비난을 받게 되는 기사가 보도됐을 그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에게 10 만 달러를 지불해 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타임사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타임사의 상고이유는 화이어스톤 부인이 공적 인물이며, 라이프 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현실적 악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연방대법원의 렌퀴스트(Rehnquist) 재판관은 다른 5 명의 대법원 판사들을 대신해서 타임사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렌퀴스트 재판관은 게르츠(Gerts) 사례에서 공적인물에 관해 정의내린 여러 문구들을 인용하면서 화이어스톤 부인의 경우에는 그녀를 결코 공적인물로 볼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대해 특별한 양태를 보도하는 것은…… 특별한 공공의 관심사라고 생각되어 개인적 쟁점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이와 유사한 공표가 관여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어려운 문제는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의 구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부부간에 게재되어 있는 곤란한 문제들은 아마도 기사를 읽는 어떤 독자들에게는 흥미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 절차를 통한 이혼소송을 게르츠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적인 논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화이어스톤 부인이 「팜 비치 4001」의 중요한 회원이라거나 그녀가 기자회견을 가진 일, 그리고 그녀 자신이 비방적인 기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지에 게재된 화이어스톤 부인의 기사는 그녀를 공적 인물로서보다는 사적 인물로서 보도한 것이다. 더구나 그녀의 「사적인 이혼소송」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공적인 모임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적 사항이 되지를 않는다. 」

결국 이 사례는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공적 인물이라 사적 인물이나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공적 인물이라 할 지라도 기사내용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모욕적일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